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0. 31(목)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과세제도 연구

요 약

- 세계화 및 교통·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지면서 국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거의 모든 선진사회에서 외국인이 정주자(denizen)로 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더불어 인력이동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새로운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제의 재정비가 요구됨
 - 한 국가의 영토 내 주권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 및 정치적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소득세제는 국내활동을 영위하는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 국제이동 인력은 거주지국 과세환경뿐만 아니라 함께 국외 근로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됨
 - 특히 근로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연금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을 원인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선택한 조세지원에 적절한 사적연금으로 한정함
 - 국제이동 인력 증가와 조세정보 확보 가능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납세환경에 대응하여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근거를 소득세법에 포함하는 개선작업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조세조약에서 연금 부담금 규정을 다루지 않고 있는바, 국

제이동 근로자 관련 조세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관련 규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대부분이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개인이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체결·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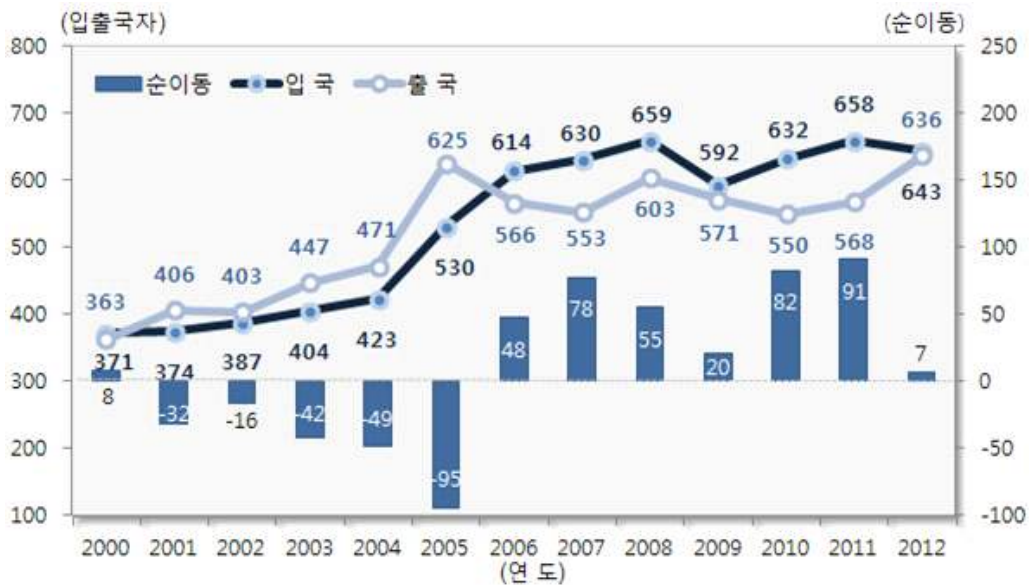
I 도입

1. 배경

- 세계화 및 교통·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지면서 국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거의 모든 선진사회에서 외국인이 정주자(denizen)로 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¹⁾
- 우리나라 역시 국제 인구이동 추이는 20세기 초까지는 해외로 이주하는 내국민의 비중이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보다 큰 이민 송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더 커짐

[그림 1-1] 국제 인구이동 추이(2000~2012)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12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보도자료, 2013. 7. 2.

-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나 외국인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

1) Hammer(1990), 설동훈(2013) 재인용

4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과세제도 연구

권임2)

○ 198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를 시작으로 해서 1990년대 결혼이민자, 2000년 무렵 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시대별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³⁾

□ 우리나라 내국민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취업 이주, 독립 이주, 연고 이주(초청), 국제결혼, 사업 이주 형태의 해외 이주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해외로 이민을 갔던 세대가 은퇴 후 다시 국내로 이주 (역이민)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로 역이주한 교포는 2003년 2,962명에서 2011년 4,257명으로 43%나 급증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 2,122명, 캐나다 693명, 중남미 지역 국가 629명, 뉴질랜드 115명, 호주 67명, 기타 631명 등임⁴⁾

<표 1-1> 해외이주자 증감 추이¹⁾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11,758	2,412	16,291	17,393	16,605	14,032	12,829	13,171	12,447	12,447	10,843
캐나다	6,937	5,658	5,858	3,898	2,792	2,778	2,075	3,483	2,721	2,315	1,375
호주	673	948	1,333	1,761	1,940	1,835	1,846	1,749	1,608	1,556	906
뉴질랜드	1,451	1,182	1,160	1,422	1,574	942	386	645	721	780	570
라틴 아메리카	122	557	500	378	281	433	490	591	510	509	81
기타	2,116	2,827	4,496	3,855	3,044	2,988	3,320	2,786	3,011	3,464	1,548
합계	23,057	23,584	29,638	28,707	26,236	23,008	20,946	22,425	21,018	21,071	15,323

주: 1) 해외이주 신고자와 현지이주 신고자 합계임.

- 해외이주자: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

- 현지이주자: 외국 거주 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재외공관에 현지이주 신고한 자

자료: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2) OECD(2013a)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음

3) 설동훈(2013)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저숙련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다가,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를 실시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

4) 서울신문 2012년 5월 3일자 10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3010010>

- 영구 이주(permanent migration) 형태 이외에도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은 다국적기업들의 등장과 함께 국제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국제적 이동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
 - 국제적 인력이동은 다국적 기업의 종업원 교환근무(intra-company transferees), 기업투자자 및 기업설립자 등 사업상 방문자(Business Visitor)들의 국가 간 단기적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⁵⁾

- 국내활동을 영위하는 거주자 위주의 과세체계를 가진 현행 소득세제는 국내·외 이주나 파견 등을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동 인력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득세제는 한 국가의 영토 내 주권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 및 정치적 현안에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국내적인 문제로만 간주하여 국내활동을 영위하는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⁶⁾
 - 그러나 국제이동 근로자는 거주지국 과세환경뿐만 아니라 함께 국외 근로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의 조세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자본의 국제화와 더불어 인력이동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새로운 과세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제의 재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근로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연금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제시함⁷⁾
 - 국제비교를 위하여 인적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미국과 캐나다를 주로 연구하였음
 - 일본은 2000년 초 사업주에 의한 사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그 제도의

5) 최영렬(2010)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서비스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Service, GATS)상 상업적 주재 규정(Mode 3, commercial presence)에 근거한 국제적 인력이동이고, 자연인 주재 규정(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과 연계된 국제적 인력이동도 있음. GATS의 서비스 분야 공급형태는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Mode 1, cross border supply), 서비스의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 자연인 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의 4가지로 구분됨

6) Jinyan Li(2006)

7) 본연구에서 논의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을 원인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선택한 조세지원에 적절한 사적연금으로 사용자 지원이 있는 개인연금제도도 포함함.

성숙도가 높지 않으나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므로 추가함⁸⁾

2. 현행 퇴직연금제도하에서의 문제점

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 상실

- 은퇴 이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제도 장려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다양한 조세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 주된 조세지원으로는 ① 납입 단계시 연금보험료(pension contribution)의 과세이연 ② 운용 단계시 운용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③ 연금수령 단계에서 연금급여(pension benefits)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의 적용 등이며 각각의 국가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음
 - ‘과세이연’의 형태는 ① 납입 단계시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수령 단계에서 과세, ②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근로자 본인의 연금 기여금은 소득공제 후 수령 단계에서 과세, ③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투자수익은 발생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임
 - 이러한 조세지원으로 인하여 퇴직연금과세규정은 연금보험료 납부 단계부터 연금급여 수령 단계까지 장기에 걸쳐 상호 연결되어 있고 국제이동 근로자는 각 단계별로 부여한 조세지원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국제이동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처리임⁹⁾
 - 단기간 국제이동 근로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은 과세이연의 조세지원이 적용되지만, 파견국 세무목적상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파견국에 그 원천이 있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¹⁰⁾

8) <http://www.mhlw.go.jp/topics/bukyoku/nenkin/nenkin/kyoshutsu/gaiyou.html>

9)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함

10) 거주자 판정은 본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거주자를 가정함

- 조세조약상 근로소득(income from employment)은 고용(employment)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로 근로자의 거주지국은 물론 근로가 실제로 수행된 국가(용역수행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음¹¹⁾¹²⁾
 -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포함되며 당해 보수가 지급되는 장소가 거주지국인지 또는 용역수행지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됨

- 즉, 국제이동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주지국과 용역수행지국 간 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각 국가의 세무 규정 차이로 인하여 조세지원 효과가 상실되거나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
 - 용역수행지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지국의 세무신고 또는 연금급여 수령 단계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함
 - 납입 단계의 근로자 소득세 세무신고시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용자 부담금에 부과된 파견국의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수령 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응하여 과세시기 및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파견국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함

나. 외국 연금소득의 과세권 확보 규정 미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급여 수령단계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연금소득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통해 우리나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국내로 이주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가 퇴직 후 거주지국 과세가 원칙인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

11) OECD 모델조약 제15조 1항

12) 조세조약상 183일 미만 단기 체류자 등 특정한 경우 용역 근로소득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에서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음

방 국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있음

- 연금보험료 납부단계는 사용자부담금의 과세이연 및 근로자 본인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하고, 연금급여 수령단계에서는 조세조약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아 세수손실이 발생하게 됨
- 비거주자가 퇴직한 이후 거주지국 과세가 원칙인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음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하지 못하는 상황임

II

주요국 퇴직연금제도 국제비교¹³⁾

1. 퇴직연금과세제도

-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미국의 퇴직연금과세제도는 일반적으로 EET형(면세-면세-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납입단계에서 면세(Exempt)라고 함은 근로자 연금부담금의 소득공제, 사용자 부담금의 과세이연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 단계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EET형이라기보다는 EET와 TEE가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은 운용 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 적립금에 대하여 1.173% 특별법인세 부과규정이 있으나 2014년까지 적용하지 않음
 -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EET형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인 TFSA의 경우는 TEE 형태를 따름
 - 미국은 일반적으로 EET형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Roth 401(k) 제도의 경우에

13) 본문은 홍범교·송은주·박수진(2013)의 “IV. 퇴직연금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요약·수정함

는 TEE 형태를 따름¹⁴⁾

- TEE형의 경우 납입 단계에서는 소득공제 등을 통한 과세이연은 되지 않지만 운용 단계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우리나라 비과세 금융상품과 세제지원 효과가 유사함

□ 퇴직연금제도의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조세지원을 살펴봄

-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의 경우에는 납입 단계에서 근로소득 과세가 아닌 수령 단계로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보험료 근로자 본인 기여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어 과세이연을 허용함
-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감세혜택이 주어지고, 일부 국가는 연금급여 수령시 감세혜택을 제공함

가. 납입 단계 국제비교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납입 단계에서 사용자가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하는 연금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됨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근로자 본인의 기여금 적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미국의 경우 근로자 적립이 가능함

- 단, 근로자기여금의 소득공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한국, 일본, 미국은 근로자 본인의 기여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함

- 단, 캐나다의 경우 근로자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기여금 적립이 불가함

14) Roth 401(k)는 2006년 IRC 402(A)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401(k)와 Roth IRA의 특성을 결합한 확정기여형 제도로 세후 소득을 적립하고 인출시에 비과세를 적용함. 59.5세 이후 연금급여 수령시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음

10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과세제도 연구

- 한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적으로 고려됨
 - 한국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불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최고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함
 - 캐나다의 근로자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는 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인 퇴직연금제도(RPP), 이연이익분배제도(DPSP)¹⁵에 불입된 연금 부담금을 고려하여 산정됨
 - 외국 연금제도에 불입된 외국인 사용자 연금 부담금도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 계산시 고려됨
 - 한해 동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인 경우 최대 24,270캐나다달러임
 - 미국은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연금 부담금을 불입하는 경우 최대 17,500달러 외 개인연금계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불입한 연금 부담금 중 최대 5,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한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신고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일본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최고 4만엔 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우에는 법정 사용자 부담금 한도 내에서 적립한 근로자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개인형 확정기여형 연금의 경우 최고 276,000엔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15) 이연이익분배제도(DPSP)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이익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한 연금제도임

<표 II-1> 납입 단계 퇴직연금과세제도 국제비교(근로자 본인 기여금)

구분	근로자 본인 기여금 적립·소득공제 한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DB형 퇴직 연금	○ 근로자 적립 불가	○ 근로자 적립 가능 ○ 소득공제 가능 ¹⁾ ○ 최고 4만엔 한도	○ 근로자 적립 가능 ○ 소득공제 불가	○ 근로자 적립 불가
DC형 퇴직 연금	○ 근로자 적립 가능 ○ 400만원 (개인연금 통합)	○ 근로자 적립 가능 ○ 사용자법정부담금 한도 내 (최고 50%)	○ 근로자 적립 가능 ○ 17,500달러 (50세 이상 23,000달러)	○ 근로자 적립 불가
기타	○ 개인연금 경우 퇴직연금 통합하여 400만원	○ 개인형 확정각출형 연금 경우 근로자 적립 가능 ○ 월 23,000엔 (연 276,000엔) ²⁾	1) SEP ⁴⁾ ○ 근로자 적립 불가 2) SIMPLE IRA ○ 12,000달러 (50세 이상 23,000달러)	○ RRSP Min(①, ②) - PA ³⁾ ① 직전연소득 18% ② 23,820캐나다달러
사용자 부담금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불포함

주 : 1)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되며 2011.12.31. 이전 계약분은 최고 5만엔 한도임
 2) 단,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자영업자의 경우 월 6,800엔)
 3) PA는 사용자 지원 퇴직연금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금 급여의 가치를 의미함
 4)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는 197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사용자가 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대신에 IRA제도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용함

나. 운용 단계 과세제도 국제비교

- 조사 대상 국가 모두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일본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잔액의 1.173%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됨

<표 II-2> 운용 단계 퇴직연금과세제도 국제비교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운용수익 비과세	특별법인세 1.173% ¹⁾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다. 수령 단계 과세제도 국제비교

-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납입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음

-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서도 국가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할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는 연금으로 수령시 배우자와 최대 50%까지 연금소득을 분할 신고할 수 있어 낮은 수준의 유효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납입 단계에서 광범위한 소득공제를 허용했던 일본은 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공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 50% 비과세 등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게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 비과세, 근속연수 공제(이하 퇴직소득공제) 그리고 연분연승법에 의한 소득세를 계산함
 - 미국은 근로자 순투자액에 해당하는 원금(cost)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되며, 통상소득에 합산함
 - 1932년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10년 연분연승법이나 20% 자본소득세제 선택 등의 세제혜택이 있음

<표 II-3> 수령 단계 퇴직연금과세제도 국제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정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과세 ○ 연금소득공제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소득 과세 ○ 연금소득공제²⁾ ○ 5.105%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cost)산출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 결정⁵⁾ ○ 통상소득 합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분할신고가능(최대 50%) ○ 연금소득세액공제 ○ 통상소득 합산됨
비정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과세³⁾ ○ 퇴직소득공제⁴⁾ ○ 연분연승법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 과세 ○ 퇴직소득공제 ○ 50% 비과세 ○ 소득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2년 이전 출생자는 세제혜택있음 ○ 1932년 이후 출생자 경우 수령시점, 적격연금제도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음 ○ 통상소득 합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 원천징수후 통상소득 과세

주: 1)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임
 2) 연금소득공제는 연령·수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연금 외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4) 퇴직소득공제에는 40% 비과세와 근속연수비례 소득공제가 포함됨
 5) 원금은 납입 단계에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근로자 순투자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함. 간편법, 일반법 등에 의하여 과세 제외 부분을 계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함

2. 국제이동 근로자의 퇴직연금과세

가. 주요국 개별 내국세법상 규정

- 국제이동 근로자를 해외파견 근로자(outbound employee)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inbound employee)로 구분하여 국가별 규정을 검토함
 - 국제이동 근로자는 모국 세무신고시 국내·외 소득신고의무가 있음을 상정함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는 내국세법상 외국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을 납입 단계시 근로자 근로소득으로 보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음¹⁶⁾¹⁷⁾
 - 미국, 캐나다의 경우 조세조약 연금 부담금 규정에 의해 사용자부담금의 과세

16) 원천-5, 2010.01.04.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17)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제1항 및 제3항

이연, 근로자부담금의 소득공제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함
- 조세조약 체결당사국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외국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체결 유무, 조세조약상 면세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한국은 체결된 조세조약상 연금과세원칙과 상관없이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음¹⁸⁾

○ 캐나다, 미국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함

- 단, 원천지국(지급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 외국납부세액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경감함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 미국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가 적용되어 상대방 체결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에 한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연금급여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 가능함

- 원천지국은 제한세율(15% 또는 25%)이 적용되며, 일정금액(12,000달러) 이하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신청에 한해 비과세 처리함

18) 국업46017-24, 2000.01.13.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표 II-4> 국제이동 근로자 연금소득과세 규정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자가 수령하는 외국연금소득	○ 과세근거 없음	○ 과세근거 없음	○ 과세소득 해당됨	○ 과세소득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국 연금소득	○ 조세조약 거주지국 과세원칙의 경우 비과세함 ○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이 요구되지 않음 ○ 조세조약 없거나,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 일본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중 일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임 ¹⁾ ○ 조세조약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율 20%가 적용됨	○ 미국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중 미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임 ○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30% 원천징수율이 적용됨 ○ 캐나다·덴마크·프랑스·남아프리카·필리핀·인도네시아·폴란드의 경우 미국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 캐나다 적격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중 캐나다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됨 ³⁾ ○ 조세조약 없거나, 조세조약상 면세규정이 없는 경우 25% 원천징수율이 적용됨 ○ 캐나다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함

주: 1)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이 있는 경우, 미국, 캐나다는 납입 단계에서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허용 및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 우리나라는 국제이동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나 과세이연은 허용하지 않음
- 미국은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한 특정 사용자부담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함
 - 해외 자회사나 국내 자회사의 해외 지점은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 가입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특정 사용자부담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됨
 - 단,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는 미국원천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함
- 캐나다는 외국 연금제도에 불입하는 특정 사용자부담금은 종업원 복지제도 (Employment benefit plan, BEP)의 일환으로 보고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수령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과세하여 과세이연 효과가 있음
 - 해외 파견 근로자나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 연금제도에 불입

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BEP 일환으로 보고 손금산입이 가능함

- 국내체류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RCA)에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과세이연 되지 않음

나. 주요국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 대부분 조세조약 연금조항은 연금수령액(distribution from pension plans)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 부담금(contribution to pension plan)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조세조약에서는 대체로 연금소득의 국가별 과세권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OECD 모델협약은 퇴직연금 급여 수령시 연금 발생의 원천이 있는 국가가 아닌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2005년 OECD 모델협약 주석서 개정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에서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파나마·바레인 등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며, 남아프리카·덴마크·벨기에·싱가포르·인도네시아·체코·카타르·캐나다·태국·우루과이의 경우에는 거주지국·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가 가능함

-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는 원천지국 과세도 가능함

- 그러나,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연금 급여에 대한 과세권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두에 있음

<표 II-5> 미국 조세조약 연금소득(pension distribution) 원천지국 과세규정 (단위: %)

국가	제한세율	국가	제한세율
캐나다	15	인도네시아	15
덴마크	30 ¹⁾	폴란드	30
프랑스	30	남아프리카	15
필리핀	30	-	-

주: 1) 2000년 3월 1일 이전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임

<표 II-6> 캐나다 조세조약 연금소득 원천지국 과세규정

(단위: %)

국가	제한세율		국가	제한세율		국가	제한세율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알제리아	15	25	자메이카	25	25	이스라엘	15	25
아르헨티나	15	25	일본	25	25	이탈리아	15	25
아르메니아	15	25	요르단	25	25	코트디브아르	15	25
오스트리아	25	25	카자흐스탄	15	25	남아프리카	25	25
아제르바이잔	15	25	케냐	15	25	스페인	15	25
방글라데시	15	25	한국	25	25	스리랑카	15	25
바베이도스	15	25	쿠웨이트	15	25	스웨덴	25	25
벨기에	25	25	키르기스스탄	15	25	스위스	15	25
브라질	25	25	라트비아	15	25	탄자니아	15	25
불가리아	15	25	리투아니아	15	25	태국	25	25
케메룬	25	25	룩셈부르크	25	25	트리니다드토바고	15	25
칠레	25	25	말레이시아	15	25	튀니지	25	25
중국	25	25	몰타	15	25	코트디브아르	15	25
크로아티아	15	25	멕시코	15	25	가봉	25	25
키프로스	15	25	몰도바	15	25	싱가포르	25	25
호주	15	15	몽골	15	25	슬로바키아	15	25
체첸	15	25	모로코	25	25	슬로베니아	15	25
덴마크	25	25	네덜란드	15	25	우크라이나	25	25
도미니크공화국	18	25	뉴질랜드	15	15	아랍에미리트	25	25
에콰도르	15	25	나이지리아	25	25	영국	-	25
이집트	25	25	노르웨이	15	25	미국	15	25
에스토니아	15	25	오멘	15	25	우즈베키스탄	25	25
핀란드	20	25	파키스탄	25	25	베네수엘라	25	25
프랑스	25	25	파파아뉴기니아	15	25	베트남	15	25
독일	15	25	페루	15	25	잠비아	15	25
가이아나	25	25	필리핀	25	25	짐바브웨	15	25
헝가리	15	25	폴란드	15	25	레바논	15	25
아이슬란드	15	25	포르투갈	15	25	세네갈	15	25
인도	25	25	루마니아	15	25	아일랜드	15	25
인도네시아	15	25	러시아	25	25	-	-	-

자료: Canada Revenue Agency(2007), p.12~18, Appendix C Withholding tax rates on pensions and annuities paid to residents of countries with which Canada has an income tax convention in force 재조정함

- 2000년대 전후로 하여 기업연금제도가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자 부담금 관련 이중과세를 경감하고 조세지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체결시 연금 부담금 특례 규정을 반영함
 - 조사국 중 한국, 일본이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연금소득 과세권 배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연금 부담금 규정은 반영되지 않음
 - 미국, 캐나다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연금 부담금 규정이 포함됨

- 미국이 체결한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 연금 부담금 규정을 살펴보면 ① 모국 적격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은 파견국 내에서 근로소득 불포함(과세이연), ② 외국 적격퇴직연금제도 근로자 부담금의 세무신고시 소득공제 허용(과세이연), ③ 운용 단계의 투자수익 비과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적격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 본인의 기여금의 소득공제도 조세조약 체결국 간에는 가능토록 규정함
 - 단, 조세지원은 모국과 파견국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대상이 되는 적격퇴직연금제도는 계약 당사국 간의 세무목적상 인정되는 연금제도에 상응하여야 함
 - 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의 연금제도 유형에 대한 국가 간 약정을 체결하기도 함
 - 영국,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 의정서에서는 적격퇴직연금제도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규정도 포함됨

-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에 의한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와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파견국에서 체류하면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수령한 보수는 파견국에서 과세됨
 - 파견국 근로 개시 직전 모국 적격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파견국 근로 개시 이전 근로자는 파견국의 거주자 지위는 필수요건이 아님. 파

전국 내에서 근로제공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파견국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employer)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 파견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연금 부담금과 연금 급여는 파견국에서 수행되는 근로자의 근로에 귀속되어야 함

□ 조세조약에 의한 외국 연금제도에 납부한 특정 연금 부담금 조세지원은 해당 계약당사자국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범위 내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표 II-7> 미국 조세조약상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 부담금 규정

국가	발효일	조세지원	적격연금제도
프랑스	2007년 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급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 의정서에 예시함 · 프랑스 관련법령(French social security legislation)에 의한 프랑스 연금제도를 포함한 퇴직연금제도임 · 미국 401(a) 규정에 의한 적격연금제도, IRA, 408(p), 403(a) 규정에 의한 적격연금제도, Roth IRAs
독일	2008년 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급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해당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세지원을 제공받는 적격연금제도
스위스	1998년 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해당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세지원을 제공받는 적격연금제도로 미국 Keough plan, IRA 예시됨
네덜란드	2005년 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급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상 적격연금제도 규정을 위한 별도의 약정 체결함 ¹⁾
영국	2004년 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 제안각서에 열거됨 · 영국 관련 법령(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of 1988)에 의해 조세지원을 받는 연금제도 · 미국의 경우 401 (K) 연금제도, IRA, SEP, Roth IRA, IRC §403 (a)와 (b)규정에 의한 연금제도
캐나다	2009년 1월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사용자 부담금 손급산입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조세조약 의정서에 열거됨 · 캐나다의 경우, RPP, RRSP, RSP, RRIF 포함됨 · 미국의 경우, 적격연금제도, 401(k) 연금제도, IRA, IRP, 간이퇴직제도계좌, 403(b)제도임

주: 1) Notice 2000-57, 2000-2 C.B 389, 2000-43 I.R.B. 389.
자료: IRS, Publication 901(2013), 조세조약 의정서

-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은 대체로 외국 적격퇴직연금제도 근로자 부담금의 세무신고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의 조세조약 의정서(개정)에서는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외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운용단계의 투자수익 비과세 관련 조세지원도 포함
- 근로자 부담금의 소득공제와 사용자 부담금 손금산입 요건이 제시됨
- 이 외에도 미국 및 캐나다 양국에서 허용되는 적격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정하여 의정서 본문에 열거함¹⁹⁾

<표 II-8> 캐나다 조세조약 사용자 지원 연금제도 부담금 규정¹⁾

국가	발효일	조세지원	적격연금제도
프랑스	1989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AGIRC와 ARRCO를 프랑스 적격연금제도로 봄 ²⁾
독일	2001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전문직중협회(Berufskammern) 가입회원을 위한 전문가연금제도를 독일 적격연금제도로 봄
아일랜드	2006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아일랜드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세지원의 적용을 받는 기업연금제도는 적격연금제도로 도입
라트비아	1996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라트비아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세지원의 적용을 받는 특정 기업연금제도(closed pensiju fonds)는 적격연금제도로 도입
네덜란드	1987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네덜란드 소득세법(The Dutch Wage-Income Tax Act 1964)에 의하여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연금제도는 적격연금제도로 도입
남아프리카	1998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남아프리카 관련 법령(Pension Funds Act)에 의한 기업연금제도(pension fund)는 적격연금제도로 도입
영국	2005년 1월 1일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영국 관련법령(the Finance Act 2004)에 의하여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연금제도(occupation pension scheme)는 적격연금제도로 도입
미국	2009년 1월 1일	사용자 부담금 과세이연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미국 적격연금제도, 401(k) 연금제도, IRP, 간이퇴직제도계좌, 403(b)제도, IRA는 캐나다의 적격연금제도로 봄

주: 1) 공적연금인 사회보장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음

2) AGIRC(les régimes des cadres placés sous le contrôle de l'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s des cadres), ARRCO(les régimes des salariés non cadres regroupés au sein de l'Association des régimes de retraites complémentaires)

자료: Canada Revenue Agency(2011), <http://www.cra-arc.gc.ca/tx/nrsdnts/crssbrdrpnsn-eng.html>

19) 캐나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는 RPP, RRSP, RSP,RRIF가 포함되고, 미국 적격퇴직연금제도에는 적격연금제도, 401(k) 연금제도, 개인퇴직제도(individual retirement plans, IRP), 간이퇴직제도계좌(simple retirement plan accounts), 적격연금제도(qualified annuity plan), 403(b)제도, IRA 등이 포함됨

III

현행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외국연금소득 과세규정 정비

- 외국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이하 외국연금소득)는 조세조약 연금 규정에 의해 일차적으로 과세권 배분이 결정되며, 내국세법에서 과세소득 여부를 규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대부분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며 2005년 이후 체결하거나 개정된 조세조약부터 원천지국에서도 과세 가능한 국가가 있음²⁰⁾

-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국가로부터 외국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음
 -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외국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임
 - 외국 연금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국제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 실무상 조세징수의 비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음²¹⁾
 -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지배적인 연금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세원을 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의 경우 내국세법 규정에 의해 외국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대체로 연금소득의 과세권이 거주지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캐나다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 가능함

- 인적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외국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던 외국인 거주자²²⁾와 과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 퇴직연금

20) 덴마크, 인도네시아, 브라질,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과의 조세조약은 2005년 이전 체결되었으나 원천지국에서도 과세 가능함

21) 또는 일반적으로 EET형 체제로 운영되는 퇴직연금과세제도에서는 우리나라가 과세이연, 소득공제 등 조세지원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음

제도에 가입 후 국내로 귀환한 거주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 외국연금소득 수령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01년 229,600명에서 2011년 현재 982,5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조세조약상 연금소득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있음
 - 단, 태국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가 가능함
- 2000년대 전·후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실제 연금 급여 수령자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 최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하여 해외 금융자산 정보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 조세징수 실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외국연금소득 관련 정보의 입수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거주지국에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수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므로 국제이동 인력 증가와 조세정보 확보 가능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납세환경에 대응하여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근거를 소득세법에 포함하는 개선작업이 요구됨

2. 조세조약상 연금부담금 규정 도입 검토

□ 국제이동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한 국가(이하 거주지국)와 근로를 수행하는 국가(이하 파견국 또는 원천지국)에서 동시에 과세될 수 있음

-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경감할 수 있음
- 연금소득 역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이중과세 경감이 가능함

22)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재외동포를 포함함

- 공적연금제도의 경우는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및 조세조약 등을 통하여 이중과세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공적연금제도에 납입한 특정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음²³⁾

- 국제이동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또는 근로자 부담금은 과세이연이라는 조세지원 효과의 상실과 함께 이중과세 위험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거주지국에서는 수령 단계까지 과세이연되나, 파견국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납입 단계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거주지국의 조세지원 혜택이 상실되면서 파견국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파견국 납부세액은 납입 단계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거주지국 세무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그리고, 연금 급여 수령 단계에서도 과세시기나 소득 구분을 달리하여 실무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됨
 - 거주지국 세무신고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파견국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상실됨

- 그 결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해외 파견 근로자는 조세지원 효과가 상실됨은 물론이고,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게 됨
 - 국내거주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공평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옴

- OECD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국제이동 근로자 관련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contribution)에 대한 이중과세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음
 - 1992년 7월 23일 국가 간 연금(Cross-border pension) 부담금에 대한 보고서인

23) 서이46013-10468, 2003.03.10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외국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 부담금의 세무처리(The Tax Treatment of Employee's Contributions to Foreign Pension Schemes)」를 채택하고 모델협약 제18조 주석서(Commentary)에 반영함²⁴⁾

- 1996년 모델협약 주석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모국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은 파견국 근로자 부담세액 계산시 소득공제·비과세(excluded)될 수 있음을 명시함²⁵⁾
- 2005년에는 2004년에 발표한 국제 연금제도에 관한 기술적 현안(Technical issues related to cross-border pensions) 보고서를 모델협약 연금소득 주석서에 반영하면서 외국 연금제도에 납부한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금(contribution)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²⁶⁾

□ 퇴직연금제도의 역사가 깊고, 해외투자활동이 활발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을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2001년에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조세조약상 연금 부담금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 국제이동 근로자와 관련하여 조세 공평성 및 조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해외파견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 조세지원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직면한 이중과세를 경감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내거주 내국인 근로자와의 조세 형평성 및 국제이동에 따른 조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 그리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도 가능할 것임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의 과세제외 및 근로자

24) Fleeman(2008)

25) Serota(2010), p. 14

① 파견국에서 근로 개시 이전 모국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② 모국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에 대한 모국 조세지원이 가능하고, ③ 모국 조세지원에서 허용되는 금액을 하도록 함

26) 조명연(2007), p. 285

이외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권 배분, 국가간 연금수급권 이전문제(portability of pension right), 연금의 범위, 공적연금제도 처리 등에 대하여 정비함

부담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게 되어 세수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요구됨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중 단순 기능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모국에서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세수손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²⁷⁾

□ 그러므로 조세조약 체결 및 개정시 연금 부담금 규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조세조약상 연금소득 거주지국 과세원칙 변경

□ 대부분 조세조약 연금조항은 연금수령액(distribution from pension plans)의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OECD 모델협약은 2005년 주석서 개정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급여 수령시 연금 발생의 원천이 있는 국가가 아닌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규정함
 - 이 경우 EET형 과세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 거주하면서 납입 단계시 조세지원을 향유하던 개인이 수령 단계시 거주지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국가는 세수손실을 회복할 수 없음
 - 2005년 주석서 개정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에서도 제한세율을 적용하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6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38,477	468,940	69,537
전문 인력	소 계	50,598	46,397	4,201
	단기취업(C-4)	901	734	167
	교 수(E-1)	2,765	2,753	12
	회회지도(E-2)	20,830	20,748	82
	연 구(E-3)	2,823	2,814	9
	기술지도(E-4)	211	208	3
	전문직업(E-5)	676	651	25
	예술흥행(E-6)	4,762	3,328	1,434
	특정활동(E-7)	17,630	15,161	2,469
	단순 기능 인력	소계	487,879	422,543
비전문취업(E-9)	238,271	182,980	55,291	
선원취업(E-10)	11,363	7,302	4,061	
방문취업(H-2)	238,245	232,261	5,984	

여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또는 지급지국) 양 쪽에서 과세가 가능함

□ 2005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체결·개정한 대부분 조세조약상 연금소득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임

- 덴마크, 인도네시아,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브라질은 거주지국과 지급지국에서 모두 과세 가능하고, 칠레는 원천지국 과세국가임
 - 단, 브라질은 3,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 만일 우리나라 근로자가 은퇴 이후 연금소득을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됨
- 납입 단계시 과세이연이라는 조세혜택만 부여하고, 수령 단계에서 연금소득을 과세하지 못하여 세수손실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연금소득 과세권 배분에 대한 2005년 OECD 주석서 개정 이후 우리나라도 연금소득 과세권을 거주지국뿐만 아니라 원천지국에도 배분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의 체결·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제한세율 15%), 태국, 카타르, 우루과이(제한세율 10%), 싱가포르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며, 파나마, 바레인의 경우에는 원천지국만 과세가 가능함

□ 그러나 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대부분이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개인이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세수손실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²⁸⁾

□ 따라서 국가별 연금소득 규정 및 국제 이동성을 고려하여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체결·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28)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득세율이 0%이고, 라오스,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의 소득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음

<표 III-1> 우리나라 조세조약 연금소득 규정 현황(2005년 이후 체결, 개정)

국가	체결·개정일	연금소득 규정	국가	체결·개정일	연금소득 규정
아랍에미리트	2005. 03. 09	거주지국	아이슬란드	2008. 11. 04	거주지국
요르단	2005. 03. 28	거주지국	사우디아라비아	2008. 12. 01	거주지국
라오스	2006. 02. 09	거주지국	아제르바이잔	2008. 12. 04	거주지국
오만	2006. 02. 13	거주지국	카타르	2009. 04. 15	거주지국 원천지국
슬로베니아	2006. 03. 02	거주지국	이란	2009. 12. 08	거주지국
중국	2006. 07. 04	거주지국	라트비아	2009. 12. 26	거주지국
알제리	2006. 08. 31	거주지국	에스토니아	2010. 05. 25	거주지국
크로아티아	2006. 09. 15	거주지국	쿠웨이트	2010. 12. 27	거주지국
캐나다	2006. 12. 18	거주지국 원천지국	파나마	2012. 02. 27	원천지국
벨기에 ¹⁾	2006. 12. 31	거주지국 원천지국	스위스	2012. 07. 17	거주지국
알바니아	2007. 01. 03	거주지국	우르과이	2013. 01. 14	거주지국 원천지국
베네수엘라	2007. 01. 15	거주지국	바레인	2013. 04. 25	원천지국
태국	2007. 06. 29	거주지국 원천지국	싱가포르	2013. 06. 14	거주지국 원천지국
리투아니아	2007. 07. 11	거주지국	룩셈부르크	2013. 09. 04	거주지국

주: 1) 벨기에는 의정서 개정전부터 거주지국·원천지국 과세임

참고문헌

- 설동훈, 「국제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 36권 제1호, 2013
- 조명연, 「OECD조세모델협약주석서의 개정 동향」, 『조세법연구』[XIII-3], 2007
- 최영렬, 「한·중·일 FTA와 인력이동」, 『노동법학』 제35호(2010.9), 2010
- 홍범교·송은주·박수진,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日本 厚生労働省(<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01/01-01.html>)
- Canada Revenue Agency, “Guidance for Taxpayers Requesting Tax Treaty Relief for Cross-Border Pension Contribution,” 2011
- _____, “Applicable rate of part XIII tax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persons in countries with which Canada has a tax convention,” Income Tax Information Circular 76-12R6, 2007
- Fleeman, M Grace, “Cross-Border Pension Contributions-A US Perspective,” *The Tax Journal*, 23, June 2008
- Hammar, Tomas, “Democracy and the Nation State: Aliens, Denizens and Citizens in a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Aldershot, UK: Avebury,” 1990
- IBFD,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10 and Key Tax Features of Member countries 2012*, 2012
- IRS,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2013
- _____, “The Taxation of Foreign Pension and Annuity Distributions, International Tax Gap Series,” 2008
- Jinyan Li, “International Mobility of Highly Skilled Workers in the Canadian Context: Tax Barriers and Reform Options,” Skills Research Initiative Working Paper 2006 D-21, Government of Canada, 2006
- OECD, *OECD Pension Indicators(2013)*, 2013a
- _____,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2013b
- Serota, Susan P., *United States/Canada Cross Border Pension Issues*, 2010

작성자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02-2186-2226)